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741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년 1월 2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 조문을 수정하는 것임
- 교육과학기술부의 『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』(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기획과 2008. 12. 10)에 의거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5% 감축 조정 배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근거법규

- 가.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3조
- 나.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, 제14조의2, 제19조
- 다.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
- 라.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-6526(2008.12.29) 「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조정 배정」

3. 주요골자

- 현행 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"제35조"를 "제33조"로 수정함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,154명에서 6,796명(358명 감축)으로 변경함 (안 제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예산부서와 별도 협의

다. 협의 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(2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(3) 규제심사 : 관련부서 협의결과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

- 규제신설 : 없음 - 규제강화 : 없음

- 규제폐지 : 없음 - 규제완화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”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

제2조 본문 중 “7,154명”을 “6,796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호 중 “7,136명”을 “6,778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의 총수를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해소 시까지 그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